

##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)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)**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**제4조(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)** 법 제9조제1항제2호 나목의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”은 별표 2와 같다.

**제5조(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시험과목 등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(이하 “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”이라 한다)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응시 자격,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③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.

1. 제1차시험: 선택형 시험

## 2. 제2차시험: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

-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(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)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-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분야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·장소·방법·과목·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(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)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⑧ 그 밖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**제6조(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)** 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응시자”라 한다)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(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- ② 응시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.
  - 1.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: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  - 2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
  - 3.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: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

4.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:  
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

⑤ 그 밖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 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**제7조(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)**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 
모두 갖추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스  
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  
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  
른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
2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 
이수증명서 1부
3.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으로서, 규  
격은 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로 한다. 이하 같다) 2장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1항제2  
호에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 
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 
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 
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기재사  
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
한다.

1.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
2.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
3. 사진 1장

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 
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재  
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  
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자격증 원본(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)
2. 사진 1장

3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(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

⑥ 제1항,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접수된 서류의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8조(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)**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요건(제3조제1항 관련)

| 구분         | 지정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시설 및 장비 | <p>가. 교육시설을 교육환경 및 보건 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</p> <p>나.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추 것. 이 경우 강의실 및 실습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1) 강의실: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, 수용가능 인원이 20명 이상일 것</p> <p>2) 실습장: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</p> <p>다. 컴퓨터, 빔 프로젝터 등 교육보조재 및 실습을 위한 기자재를 갖추 것</p> <p>라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</p> <p>마. 그 밖에 회의실, 자료실, 상담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 것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인력      | <p>가.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. 이 경우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</p> <p>1) 책임교수요원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</p> <p>가) 농업, 축산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</p> <p>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농업, 축산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</p> <p>다)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</p> <p>2) 교수요원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</p> <p>가) 농업, 축산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</p> <p>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농업, 축산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</p> <p>다)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</p> <p>나.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·관리하는 전담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</p> |

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(제4조 관련)

| 교육분야 |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원예   | 가. 스마트농업의 이해          | 1) 스마트농업의 이해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2) 스마트농업 지원 제도 및 정책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3) 스마트농업 기술동향               |
|      | 나. ICT시설·장비 선택 및 운영관리 | 1) ICT시설 및 장비 선정 및 설치점검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2) ICT시설 및 장비 SW/HW 작동 및 조절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3) 스마트농업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      |
|      | 다. 생산관리 및 ICT기반 환경관리  | 1) 작물재배 및 ICT기반 생육·결실관리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2) 종자·육묘관리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3)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4) ICT기반 토양·시비·양액·배지관리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5) 병충해관리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6) ICT기반 복합환경조절 및 관리        |
|      | 라. 시설 및 장비·안전관리       | 1) 농기계·기구 및 농자재관리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2) 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마. ICT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| 1) ICT기반 데이터 기록 및 관리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2) ICT기반 데이터 분석 및 해석        |
|      | 바. 상담 및 교육방법          | 1) ICT데이터 기반 상담 및 자문 실무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2) 스마트농업 교육 및 지도 실무         |
| 축산   | 가. 스마트농업의 이해          | 1) 스마트농업의 이해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2) 스마트농업 지원 제도 및 정책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3) 스마트농업 기술동향               |
|      | 나. ICT시설·장비 선택 및 운영관리 | 1) ICT시설 및 장비 선정 및 설치점검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2) ICT시설 및 장비 SW/HW 작동 및 조절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3) 스마트농업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다. 생산관리 및 ICT기반<br>환경관리 | 1) 사육생산 및 ICT기반 육성 및 비육관리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2) 번식 및 개량관리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3) 축산물 생산·출하관리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4) ICT기반 농장데이터·축사환경관리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5) ICT기반 급수 및 급이관리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6) 분뇨 및 악취관리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7) 질병 및 방역위생관리            |
|  | 라. 시설 및 장비·안전관<br>리     | 1) 시설 및 장비관리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2) 사료 및 초지관리      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3) 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|
|  | 마. ICT기반 데이터 수집<br>및 분석 | 1) ICT기반 데이터 기록 및 관리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2) ICT기반 데이터 분석 및 해석      |
|  | 바. 상담 및 교육방법            | 1) ICT데이터 기반 상담 및 자문 실무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2) 스마트농업 교육 및 지도 실무       |

##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응시자격,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(제5조제2항 관련)

### 1. 응시자격

| 자격분야  | 응시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원예 | 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시설원예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</li> <li>2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업무(농업기술 또는 농업분야 첨단기술 활용한 재배·생산·가공 등의 업무나,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·설비·시스템 등의 설계·연구·개발·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 또는 농업이나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·지도·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, 이하 “스마트농업관련업무”라 한다)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4)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|
| 나. 축산 | 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축산기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</li> <li>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4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5)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

위 표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경력 및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분야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 2. 시험과목

| 분야    | 시험방식     | 시험과목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원예 | 1) 제1차시험 | 가)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 장비 구축·관리 |
|       |          | 나)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| 다) ICT기반 데이터 분석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| 라) 상담 및 교육방법론              |
|       | 2) 제2차시험 | 스마트농업관리실무                  |
| 나. 축산 | 1) 제1차시험 | 가)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 장비 구축·관리 |
|       |          | 나)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| 다) ICT기반 데이터 분석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| 라) 상담 및 교육방법론              |
|       | 2) 제2차시험 | 스마트농업관리실무                  |

## 3. 합격기준: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

가. 제1차시험: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

나. 제2차시험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

##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기준(제8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준을 늘릴 수 있되,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처분(자격정지처분으로 한정한다)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    | 행정처분기준 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이상<br>위반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| 법 제10조 제1항제1호 | 자격취소   |       |             |
| 나.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0조 제1항제2호 | 자격취소   |       |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다.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| 법 제10조 제1항제3호 | 자격정지<br>2년 | 자격정지<br>3년 | 자격취소 |
| 라.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                | 법 제10조 제1항제4호 | 자격정지<br>1년 | 자격정지<br>2년 | 자격취소 |

##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접수번호 |        | 접수일자            | 처리기간 | 30일 |
| 신청인  | 기관명    |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|      |     |
|      | 대표자 성명 | 사무소 전화번호        |      |     |
|      | 사무소 주소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
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귀하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청인 제출 서류   |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| 수수료<br>없음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

접수



서류검토



지정서 발급

신청인

처리기관: 농림축산식품부

제 호

##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사무소 주소:

(전화번호: )

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직인

제 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.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|
| 응시번호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사진<br>(3.5cm×4.5cm) |
| 응시자  | 성명(한글)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휴대전화번호(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)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|
| 주소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|

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응시자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응시자격 증명서류(해당 기관에서 발급·확인한 기술자격, 경력, 학력 증명서류를 말합니다) 각 1부 | 수수료<br>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..... 자르는 선 .....

제 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표

|            |        |  |  |
|------------|--------|--|--|
| 응시번호       | 성명     |  |  |
|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|  |  |
| 시험 일시 및 장소 |        |  |  |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직인

### 응시원서 작성방법

1. 응시번호: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.
2. 성명: 한글 성명을 적습니다.
3. 주민등록번호: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4. 휴대전화번호: 필요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.
5. 주소: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,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.

### 응시자 주의사항

1.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발생한 착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2. 접수된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3.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운영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.

[ ] 발급  
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[ ] 변경발급 신청서  
[ ] 재발급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접수번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시              | 처리기한 | 30일 |
| 신청인         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<br>(외국인은 국적)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변경사항        |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재발급<br>신청사유 | 재발급 신청사유 [ ]분실 [ ]훼손 [ ]기타( )<br>사유가 발생한 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
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  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발급 신청의 경우<br>가. 영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<br>나. 법 제9조제1항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<br>다.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 3.5cm×4.5cm, 이하 같음) 2장<br>2.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: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,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<br>3. 재발급 신청의 경우: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(혈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) 및 사진 1장,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청인 기본증명서 1부(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) | 수수료<br>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 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1. 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, 농림축산식품부(업무위탁기관 포함)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, 변경, 재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 
동의 [    ], 미동의 [    ]

2. 위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발급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 
동의 [    ], 미동의 [   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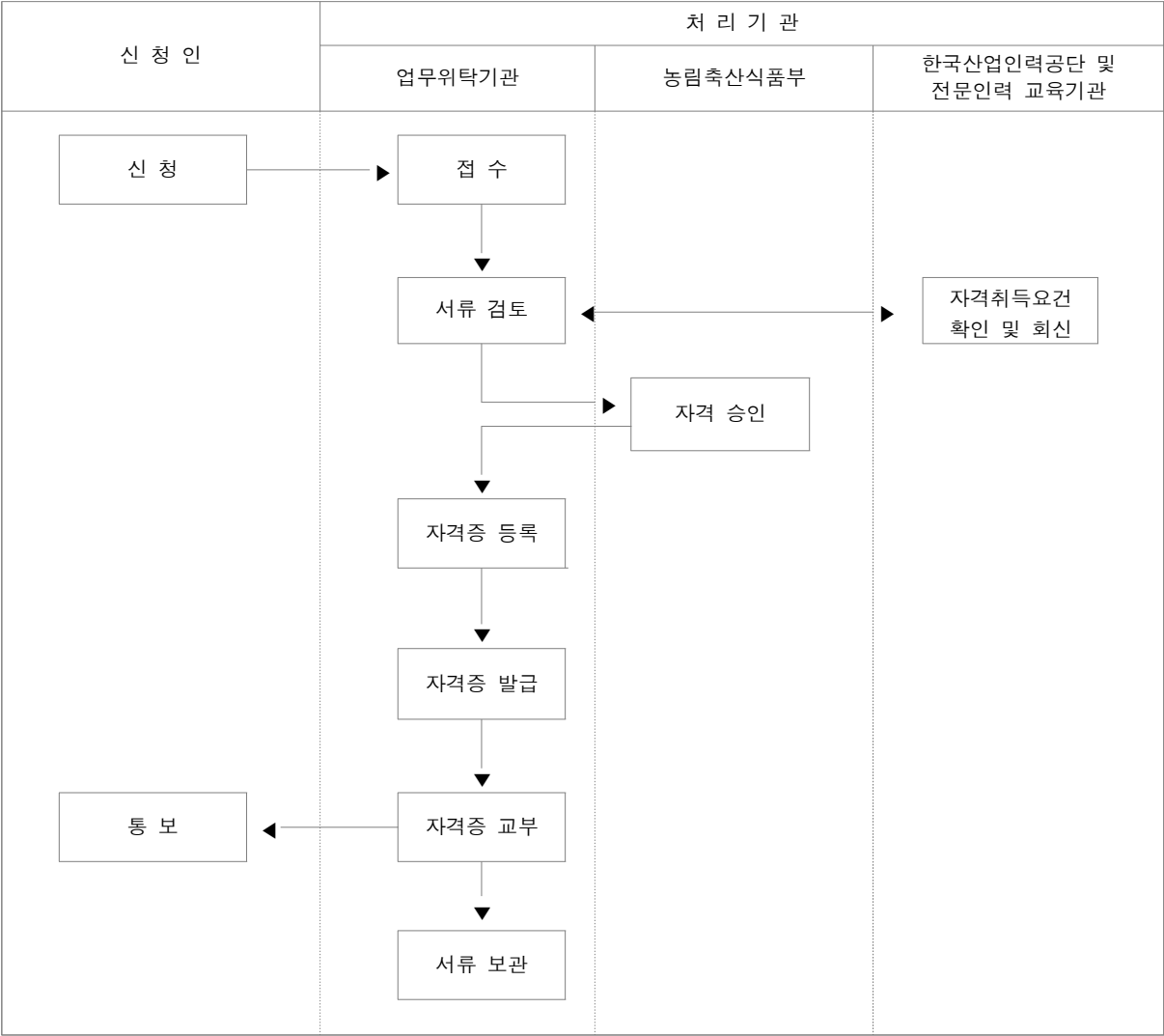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1. 신청인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,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- [예] ○○도 ○○시(군) ○○동(면) ○○로 ○○(△△△△△)
- \* 시·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.(서울특별시→서울, 충청북도→충북)
2. "변경사항"란에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야 합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제 호

##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

사 진  
3.5cm × 4.5cm

1. 성명:

2. 생년월일:

3. 자격분야: 스마트농업관리사 분야

위 사람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직인